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20
----------	-------

발의연월일 : 2026. 10. 7.

발 의 자 : 김미애 · 강대식 · 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영세 · 권영진 · 김 건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김도읍 · 김민전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규 · 김태호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박수영 · 박정하 · 박정훈
박준태 · 박충권 · 박형수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현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신성범 · 안상훈 · 안철수
엄태영 · 우재준 · 유상범

유영하 · 유용원 · 유의동
윤상현 · 윤영석 · 윤용근
윤재옥 · 윤한홍 · 이달희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이소희 · 이양수 · 이인선
이종배 · 이종욱 · 이진숙
이철규 · 이현승 · 임이자
임종득 · 장동혁 · 정동만
정성국 · 정연욱 · 정점식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진종오 · 최보운 · 최수진
최은석 · 최형두 · 한기호
한지아 의원
(109인)

제안이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 발생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음. 그 근본원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 명예직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지휘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상근 사무기구에 권한이 집중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였던 점, 상시 인력이 없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인하여 현장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

한 점, 내부 규칙에 의한 자체감사로는 채용·회계 비위를 걸러내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으며, 이 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모법(母法)으로서 마련되는 것임.

이에 첫째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를 관리한 사람이 그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어 외관상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대법원장의 헌법상 중앙위원 지명권과 헌법이 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방식(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회의·회의록의 공개와 국회 보고를 통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함.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지 아니하며,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따라야 함.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를 견제하는 폐쇄적 구조를 넘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투명성·전문성 및 책임성의 원칙과 정책결정·감독 기능 및 집행·지원 기능의 분리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인구·면적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등을 고려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고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선거를 법률에 명시적 근거

가 있고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선거로서 공공성이 큰 경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의 당내경선으로 한정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정화하여 직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취임 전 3년 이내 당적 보유·선거 관여 이력자의 임용을 제한하며, 퇴임 후 2년 간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할구역의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고, 추천정당의 교체요구를 해촉사유에서 제외하여 위원의 신분을 보장함(안 제12조 및 제16조).

마.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대법원장의 헌법상 중앙위원 지명권은 그대로 보장함(안 제13조).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두고, 위원장은 총괄, 부위원장은 각각 선거절차 사무와 규제·홍보 사무를 전담하도록 직무를 분장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을 두고, 상근 위원장이 투표용지의 인쇄·보관·인계 등 선거물품의 관리를 포함한 관할 지역의 선거관리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회의와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채용·계약·예산의 외부 통제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감사

위원·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 및 소속 공무원과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착수하도록 함(안 제27조·제35조·제50조 및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자.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장의 직무를 집행·지원으로 한정하며 사무처의 직제들이 법의 시행에 맞추어 정비하도록 함(안 제29조·제30조 및 부칙 제4조).

차.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그 직무에 관하여 지시·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감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조사권과 사무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 요구·고발권을 부여하며, 감사 결과와 조치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카.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는 시정요구·징계요구·직무배제 요구·변상 요구·수사의뢰·고발·자료보존 요구 및 제도개선 요구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결과 자체를 변경하거나 당선인의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합목적적 판단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감찰의 한계를 명확히 함(안 제39조 및 제42조).

타. 사무처의 조사·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해석 기준의 통일·긴급심의·신뢰보호를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파. 선거물품의 인쇄·보관·운송·인계·사용 및 잔여분 처리의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고, 영상기록은 5년간 보존하되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56조 및 제57조).

하.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자료의 폐기·변조, 영상기록의 훼손,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불이익조치 및 비밀누설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운영·통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한 선거관리사고”란 투표의 중단·지연, 투표용지의 부족·오류, 투표용지·투표지·투표함 또는 선거장비의 분실·훼손·변조, 대규모 전산장애 또는 정보통신시스템 침해, 그 밖에 투표 또는 개표 결과의 정확성이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2. “공식 법령해석”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질의에 대하여 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거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신한 법령해석을 말한다.

3. “선거사무 종사자”란 투표·개표 및 그 밖의 선거관리 집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임명 또는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및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규제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감찰, 국회 보고, 정보공개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결정·감독 기능과 사무기구의 집행·지원 기능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직무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정수)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명
2.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7명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7명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관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국가 전체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구·시·군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을 관할한다.

② 투표소의 설치·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고 구·시·군위원회가 이를 지도·감독하며, 개표사무는 구·시·군위원회가 수행하고 개표사무원이 이를 보조한다.

③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 및 사무소 소재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인구, 면적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시·군을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시를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통합의 기준과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정한 공공단체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무

제7조(중앙위원회의 법정 의결사항) ① 중앙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무를 총괄·관리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를 위원장·부위원장, 사무처 또는 하급위원회에 위임하거나 전결하게 할 수 없다.

1. 중·장기 선거·국민투표 관리계획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적용할 업무처리기준
2. 3급 이상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과 주요 인사정책
3.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정원 및 직무범위에 관한 기본계획
4. 예산요구서·결산 및 중기재정계획

5.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6.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의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7.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의 대응·수습 및 재발방지대책
8.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주요 법령의 최종 해석
9.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변경과 외부 보안검증에 관한 기본계획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8조(상급위원회의 지도·감독) ① 중앙위원회는 시·도위원회를, 시·도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를 각각 지도·감독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적용과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구·시·군위원회를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상급위원회는 하급위원회의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분을 위원회의 의결로 취소·변경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법적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선거사무의 제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선거는 법률에 명시적 근

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선거로서 공공성이 큰 선거
 2.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따라 위탁하는 정당의 당내경선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그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선거로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위원의 구성과 신분

제10조(중앙위원의 임명·지명 및 선출)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앙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한다.

제11조(시·도위원 등의 위촉) ① 시·도위원회의 위원(이하 "시·도위원"이라 한다)과 구·시·군위원회의 위원(이하 "구·시·군위원"이라 한다)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과, 법률·선거행정·정보보안·감사 또는 회계 분야에서 제1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상급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으로 구성한다.

②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 외의 위원의 수와 분야별 구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자격과 경력요건) ① 위원은 법률·선거행정·감사·회계·정보보안·인권 등 직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취임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직자가 아니었고 선거대책기구·선거캠프의 책임자나 상근직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위원은 재직 중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퇴임 후 2년 간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할구역의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선거실무·정보통신·감사·회계 분야의 전문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법관 등의 겸직 금지) ①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법원장은 중앙위원을 지명할 때 현직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의 당원인 사람

2.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또는 「국민투표법」을 위반하

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중앙위원과 시·도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구·시·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근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을 넘을 수 없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중앙위원은 탄핵결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시·도위원과 구·시·군위원은 정당 가입·정치관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결격사유 해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의무) 위원과 소속 공무원은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정치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본인이 관여하

였던 정당·후보자에 관한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장·부위원장과 상근체계

제19조(중앙위원회의 상근 위원장·부위원장제) ① 중앙위원회에 상근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중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근하며,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분장)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관리 정책·조직·인사·예산과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총괄 지휘한다.

②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 분야의 집행을 총괄·감독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1. 선거절차 담당 부위원장: 선거·국민투표의 절차 관리, 투표·개표 및 선거물품에 관한 사무
2. 규제·홍보 담당 부위원장: 정당·정치자금, 법령해석·조사·단속 및 선거제도·홍보에 관한 사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담당 분야에 관하여 독자적인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1조(위원장·부위원장의 책임)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사무처의 지휘·감독,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의 보고와 대응,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명 및 정보공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의 분장사항과 사무처의 집행상황을 매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또는 조직적 비위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를 보직에서 분리하고 자료보존 등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시·도위원회의 상근 위원장제) ① 시·도위원회에 상근하는 위원장을 두며, 그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상근 위원장은 관할 지역의 선거관리와 투표용지의 인쇄·보관·인계 등 선거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의 인사·회계 및 공직기강을 책임진다.

제23조(직무대행) 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직기간이 가장 긴 사람(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말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회의와 의사결정

제24조(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여 요구하거나 중대한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법령해석 기준의 설정·변경, 회의 또는 회의록의 비공개 결정,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의 최종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고위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의 공개)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투표의 비밀, 개인정보 또는 진행 중인 수사·감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 의결을 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범위·기간 및 공개 예정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7조(회의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안건, 참석자의 발언내용, 표결 결과와 위원별 찬반, 의결내용과 이유 및 소수의견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한 회의록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의결의 제한) 주요 법령해석 기준의 설정·변경,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의 대응과 조사결과, 위원장·부위원장의 호선, 고위공무원의 임용과 중징계 요구, 회의 또는 회의록의 비공개 결정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6장 사무기구

제29조(사무처)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위원장·부위원장의 집행 총괄을 보조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법령에 따른 집행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집행 총괄은 위원장·부위원장이 직접 수행한다.

③ 사무처는 위원회의 정책결정,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④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집행·지원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며, 그 직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결사항과 위원장·부위원장의 집행총괄에 따른 집행·지원사무를 처리하는 보조기관으로 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위원회에 정책안건·법령해석안을 독자적으로 상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인사·조직·정원·예산 및 계약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정 의결사항·감사위원회의 감사·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거나 대행할 수 없다.

④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상근 직위를 두지 아니한다.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시·도위원회와 구·시·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며, 그 핵심 조직과 직무범위는 이 법에서 정하고 부서별 분장과 정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선거연수원) 소속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관계자·선거사무 종사자의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두며,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공무원의 채용시험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사무처장이 실시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위임·전결의 제한)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정 의결사항, 주요 법령해석 기준의 설정·변경,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의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사무처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하거나 전결하게 할 수 없으며, 위임·전결의 범위와 처리결과의 보고절차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감사위원회

제35조(감사위원회의 설치와 독립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합의제 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감사·감찰 기능을 수행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처의 지시·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사무기구·소속 직원과 청사는 사무처와 분리하여 둔다.

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법조계·감사·회계 등 사정·감사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중앙위원회가 위촉하며, 어느 한 추천 주체도 감사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없다.

1.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천한다.

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1명

나. 가목 외의 교섭단체: 1명. 이 경우 가목 외의 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2.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4.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정보보호 관련 학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그

몫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추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중앙위원회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감사위원 중 정보보안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감사위원의 자격·결격 및 임기) ① 감사위원은 법률·감사·회계·행정·반부패·정보보안·선거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정당의 당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정당의 당직·공직선거 후보자·선거캠프 관계자였던 사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통신시스템·선거장비 등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38조(감사계획 및 감사의 종류) ① 감사위원회는 매년 연간 감사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공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기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② 전국 단위의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종료된 경우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중대한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도

의 의결 없이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계획·감사대상·감사방법 또는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그 조치요구에 대하여 승인·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39조(감사위원회의 직무와 범위)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투표·개표 등 선거관리 사무의 적법성·적정성에 관한 감사
2. 회계·예산·계약에 관한 감사
3. 채용·인사 및 이해충돌에 관한 감사
4. 공직기강과 비위에 관한 감찰
5.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감사
6.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7. 시정요구·징계요구·직무배제 요구·변상 요구·수사의뢰·고발 및 제도개선 요구

② 감사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결과 자체를 변경하거나 당선인의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행한 선거관리상 합목적적 판단의 당부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그 판단 과정의 적법성·절차적 정당성 및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사한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른 통상적인 자료제출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감사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사무국을 두며, 감사사무국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② 감사사무국에는 관계 기관의 파견 인력과 공인회계사·노무사 등 민간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으며, 감사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임용·전보 및 징계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행한다.

제42조(처분요구와 신속처분 체계)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징계요구·직무배제 요구·변상 요구·수사의뢰 또는 고발·자료보존 요구·제도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중대한 비위를 적발한 경우 사무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그 비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처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최종 징계는 임용권을 가진 위원회가 행한다.

⑤ 감사대상 기관이 제1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

제43조(국회 보고와 공개)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와 조치결과를 공

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에 관한 감사에 착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진행상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수사·재판 또는 투표의 비밀에 관한 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 사유와 공개 예정시점을 밝혀야 한다.

제44조(감사위원회의 예산) ① 감사위원회는 그 예산요구서를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중앙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편성하되 중앙위원회의 경비와 구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그 예산요구서와 반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장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제45조(설치와 독립성) ①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법

령해석의 독립성·전문성·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단속·처분 담당 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③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직 법관·정당 당직자·최근 3년 이내 선거캠프 관계자이었던 사람·공직선거 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6조(심의사항과 최종 해석) ①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법령해석 기준의 설정·변경, 선거관리위원회 간 해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긴급한 법령해석과 이의신청·재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를 거친 주요 법령해석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되, 중앙위원회가 심의결과와 다르게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긴급심의) ① 선거기간 중 긴급한 법령해석은 질의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기간 내에 해석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질의자의 정치적 기본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조치를 법령해석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법령해석의 공개) 최종 법령해석은 질의의 요지, 적용 법령, 해석 결과와 이유 및 소수의견을 포함하여 즉시 공개하고, 중앙 통합 전산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49조(이의신청·재심 및 신뢰보호) ①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식 법령해석이나 그에 기초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중 이의 신청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질의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하고 공식 법령해석에 따라 행위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과태료·행정제재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장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와 비상대응

제50조(사고의 보고) 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은 중대한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위원장과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받은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최초보고를 하고,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경위·원인·영향·현장조치·자료보존 및 감사 착수 여부를 포함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자료보존) ① 중대한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과
공무원은 관련 문서·전산기록·통신기록·영상기록·투표용지·투
표지 및 선거장비를 증거자료로 즉시 보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자료를 폐기·삭제·변조·은닉하거나 그 보
존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소송·수
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존한
다.

제52조(비상대응계획) ① 중앙위원회는 선거별로 투표용지 예상수요와
예비물량, 투표함·선거장비의 장애 대책, 전산·통신장애 대체절차,
재난 대응, 현장 책임자와 보고체계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비상대
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과 비상대응 모의훈련의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재발방지대책) 중앙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뉴얼 개선, 교육·평가, 조직·인력·예산
·장비 개선, 관계자 문책, 이행점검 계획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대책과 이행결과를 공개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선거사무 종사자와 선거물품 관리

제54조(선거사무지원단) ① 중앙위원회는 투표·개표사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사무 종사자로 구성되는 선거사무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선거별 예상 필요인원의 예비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과실로 선거관리 절차를 위반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선거사무지원단에서 제외한다.

③ 선거사무지원단의 구성·운영, 예비인력의 확보 및 선거사무지원단에서의 제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교육과 평가) ① 중앙위원회는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투표·개표 절차, 선거인의 권리 보호, 정치적 중립과 비밀엄수,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선거사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및 평가의 시기·내용·방법과 교육수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선거물품 관리) ① 중앙위원회는 투표용지·투표함·개표장비 및 주요 선거물품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인쇄·보관·운송·인계·사용 및 잔여분 처리의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물품의 인쇄·보관·운송·인계·사용 및 잔여분 처리, 단계별 책임자의 지정과 기록의 작성·보존·공개에 관한 세부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다.

제57조(영상기록) ① 투표용지·투표함의 보관·운송·인계 장소와 개표소 등 선거물품의 안전과 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개표소 내부와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은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기록은 5년간 보존하되,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은 10년간 보존하며, 그 열람·제공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다.

제11장 인사·계약·청렴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58조(채용의 공정성)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경력경쟁채용의 서류심사와 면접에는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계획·심사기준·심사결과 및 채용비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전·현직 고위공무원의 친족이 채용절차에 지원하거나 채용된 경우 그 사실과 심사과정을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이해충돌 방지) 위원과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의 친족관계·사적 이해관계 및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신고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회피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개한다.

제60조(계약의 투명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은 외부위원이 과반수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소속 공무원 또는 그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은 금액과 관계없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계약금액·계약방법·수의계약 사유와 계약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예산과 결산의 공개) 중앙위원회는 예산요구서와 확정예산, 결산과 집행실적, 기관별 주요 사업비, 수의계약 현황,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예산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2조(공익신고)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 및 소속 공무원과 선거사무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중대한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감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한 직무수행
2. 선거관리사고의 은폐·축소·허위보고
3. 채용·인사·계약·예산 관련 비위
4.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5. 자료의 폐기·변조·은닉

③ 신고자는 내부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위원회·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제63조(공익신고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해임·파면·징계·전보·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회는 불이익조치의 중지·원상회복·신변보호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12장 국회 보고와 정보공개

제64조(국회 보고) 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중·장기 선거관리계획, 주요 조직·인사·예산·계약 현황, 감사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한 이행현황,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와 재발방지대책, 주요 법령해석 기준, 공익신고 처리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와 조치결과는 제4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국회법」에 따른 출석요구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5조(정기보고서) ① 중앙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선거관리와 기관운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매년 그 감사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직접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장 경비

제66조(경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사무 종사자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에 필요한 경비
4.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외부 보안검증에 필요한 경비
5. 감사위원회와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선거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제67조(특별정려금) ①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 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제6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 근거·업무범위·책임자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

관·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선거제도 및 홍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양양을 위한 상시제도와 선거 시 투표방법·기권방지 등에 관한 제도·홍보를 실시하며, 상시제도 사업을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 행정기관이 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거·국민투표·정당관계법률

2. 주민투표·주민소환관계법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한다.

제71조(선거·국민투표·정당관계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정당관계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률에 따라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는 법률상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하

며, 긴급한 사정으로 구두조치를 한 경우 1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전산시스템의 안전성과 외부검증) ① 중앙위원회는 선거관리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매년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점검과 취약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중대한 취약점이나 침해사고가 발견된 경우 즉시 중앙위원회·감사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규칙의 제정) ① 중앙위원회가 규칙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칙안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출된 의견과 반영 여부 및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4조(권한 남용의 금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후보자 또는 국민의 정치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비밀엄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 소속 공무원 및 감사사무국의 직원(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
·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제140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장 벌칙

제77조(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자료의 폐기·변조 등) ①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와 관련된 문서·전산기록·통신기록·영상기록·투표용지·투표지 또는 선거장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삭제·은닉·훼손 또는 변조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영상기록의 훼손) 제57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영상기록 중 제7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상기록을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훼손·은닉 또는 변조하거나 그 촬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감사 방해)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방해

하거나, 감사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은닉·훼손 또는 변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0조에 따른 감사대상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 소속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위원회의 자료제출·출석·진술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존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0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의 행위가 제7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른다.

제80조(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비밀누설 등) 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에게 해임·파면·징계·전보·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비밀누설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 감사위원, 감사사무국의 직원,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2.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3. 재판절차에서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4. 국회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새로 호선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③ 시·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장을 호선한다.

제3조(현직 법관인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현직 법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위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며, 그 결원은 해당 위원을
임명·지명·선출 또는 위촉한 기관이 3개월 이내에 충원한다.

제4조(사무총장직 폐지 및 사무처 직제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은 이 법 시행일에 폐지한
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사무처장
이 임명될 때까지 사무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중앙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사무처의 집행·지원 기능 중
심으로 직제와 정원을 재편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마련하
여야 한다.

제5조(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
행 당시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폐지한다.

② 폐지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관할 구·시·군
위원회가 승계하며,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에 따
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한다.

제6조(감사위원회 등의 구성) 관계 추천기관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추천을 마쳐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같은 기간 내에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마쳐야 한다.

제7조(조직·정원 및 공무원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거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과 정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그 직급·경력 및 재직 기간은 그대로 인정한다.

③ 폐지되는 사무총장직·사무차장직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하였던 공무원의 소속·보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 정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의 위원 현원이 제4조에 따른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은 종전의 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이 경우 위원 현원이 제4조에 따른 위원 정수 이내가 될 때까지 위원을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승계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선거관리위원회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탁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행위로 본다.